

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장용대

#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지난 3. 2.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·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
- 청주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일부 지역선거구가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이 감안되어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

## 3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1명 (현행과 같음)
-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 (별표 2)

○ 청주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시의회의원 선거구역 재획정

구 분	당 초		변 경		비고 (도의원)
	선거구역	의원수	선거구역	의원수	
청 주 시 “라”선거구	분평동, 수곡1동, 수곡2동	3	모충동, 사직1동, 사직2동, 수곡1동, 수곡2동	3	청주시 제4선거구
청 주 시 “마”선거구	모충동, 사직1동, 사직2동, 사창동	2	분평동,산남동	2	청주시 제5선거구
청 주 시 “바”선거구	성화·개신·죽림동, 산남동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2	청주시 제6선거구

※ 타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

### 4. 검토의견

#### 가.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

대한민국 국회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(2010. 3. 2) 개정 의결하고, 3. 12일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.

▶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정

-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 채택 (2010. 2. 4)
- 국회 본회의 의결(2010. 3. 2)

충청북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것임.

#### 나. 주요개정내용

□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

○ 여성후보자 추천 강제조항 신설

- 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 1명씩 추천(도의원 및 시원)

※ 정당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1/2에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

○ 선거구역을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

- 해당지역 : 전국 9개 시군구(도내는 청주시 도의원 4·5·6선거구 포함)

□ 조례에 반영할 사항

○ 선거구역을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
 한 청주시 도의원 4·5·6선거구내에서 시·군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임.

도의원 선거구명	당 초			변 경			
	선거구역	인구수 (의원평균)	기초 의원	선거구역	인구수 (의원평균)	기초 의원	인구 편차
청 주 시 제4선거구	분평동,수곡1동, 수곡2동	73,768 (24,589)	3	모충동,사직1동, 사직2동,수곡1동, 수곡2동	73,293 (24,431)	3	87%
청 주 시 제5선거구	모충동,사직1동, 사직2동,사창동	54,158 (27,079)	2	분평동,산남동	65,919 (32,960)	2	117%
청 주 시 제6선거구	성화·개신·죽림동, 산남동	68,862 (34,431)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57,576 (28,788)	2	102%

다. 종합의견

금번 개정안은 2010년 3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주시의  
 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재획정하려는 것으로

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  
의원 지역구내에서 확정하는 규정과 선거권 평등에 부합하게의원 1인당  
평균인구수의  $\pm 60\%$ 내에서 지역구를 확정하면서,  
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에  
서 정한 2010년 3월 24일까지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.

이는,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·  
운영하고, 관계기관의 의견수렴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3월 11일 충  
청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 
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.

다만, 선거구역에 대한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 
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도민들이 의  
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붙 임 :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